

공정위, 『공정거래법령 개정』을 위한 민관합동위원회』 설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11일(토) 공정거래법 개정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해 정부 관련부처와 학계, 기업 등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정거래법령 개정을 위한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했다.

동 민관합동위원회의 설치는 지난 1998년 3월 27일 IBRD의 구조조정차관 제공과 관련하여 IBRD측이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을 위해 경쟁정책의 수립과 집행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장의 효율성 제고방안이나 조사권한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소비자보호 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권고와 함께 그동안 공정거래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을 위해 일부 조항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동 민관합동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추가로 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할 예정으로 있으며, 재정경제부 차관보, 법무부 법무실장, 산업자원부 차관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등 정부요원 4명과 학계, 법조계, 연구기관, 기업 및 소비자보호단체 등 민간에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간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조휘갑 정책국장이 담당할 예정이다.

동 민관합동위원회의 의회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소집하고, 동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시나 과반수 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장에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간사는 IBRD가 제시하는 내용을 포함한 실무안을 마련하여 토의안건으로 제출한다. 동 위원회는 간사가 제출한 토의안건을 심의하여 공정거래법령 등 개정 권고안을 확정하여 공정위에 제출하며, 공정위는 동 권고안을 기초로 공정거래법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동 민관합동위원회는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

한 공정거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외되는 분야에 대해 검토하는 한편, 공공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한의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의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 제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밖에도 공정거래법 등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과 소비자보호 강화방안 등을 마련하여 이를 공정거래법령 등 개정 권고안에 포함시키게 된다.

민관합동위원회는 공정거래법령 등의 개정 권고안을 확정하여 공정위에 제출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1998년 4월 하순에 제1차 민관합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1998년 7월 31일까지 동 위원회 차원의 공정거래법령 개정 권고안을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관합동위원회 위원 명단〉

구분	성명	현 직책	
정부 (4명)		재정경제부 차관보 법무부 법무실장 산업자원부 차관보 공정위 사무처장	
민간 (11명)	학계 (4명)	서헌제 이은영	중앙대 법대 학장 외대 법대 교수 (소비자보호원 비상임이사)
		최정표 장승화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서울대 법대 교수
	연구기관 (2명)	신광식 유승민	KDI 연구위원 KDI 연구위원
		기업 (2명)	이주선 최동규
	소비자단체 (1명)		송보경
	법조계 (2명)	윤호일	변호사
윤세리		변호사	